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김인식 의원외 7인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불 임 참 조
4. 검 토 의 견 : 불 임 참 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2월 5일

교육사회위원회  
전문위원 권태환

#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29일 김인식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혈액수급 차질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 및 헌혈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함(안 제7조).

## 3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「혈액관리법」 및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##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는 목적을,
- 안 제2조는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,
- 안 제3조는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4조는 헌혈권장사업의 분석·평가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,
- 안 제5조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추진 단체의 경비지원 및 포상 등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,
- 안 제6조는 헌혈권장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7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인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음.

##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본 조례안은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활성화를 통해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,
- 현재,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, 기초자치단체는 가평군, 전주시, 군산시, 목포시로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,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현재 4.6%로 극히 저조한 대전광역시의 헌혈율을 높이고 혈액수급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 사료됨.